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수 상 에 서 의 수 색 · 구 조 등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상구조사 자격관리에 관한 실질적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지도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함.(안 제30조의11제1항제2호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11제1항제2호 중 “관리·감독”을 “지정·취소, 관리·감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11(권한의 위임) ① 해양 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 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30조의11(권한의 위임) ① 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<u>관리 · 감독</u>	2. ----- ----- <u>지정 · 취소, 관리</u> <u>· 감독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246